

한국은행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

2023. 8. 31. 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규정」,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세칙」 및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에 따라 한국은행 인천본부에 배정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출규정” 및 “대출세칙”이란 각각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과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세칙」을 말한다.
2. “운용세칙”이란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을 말한다.
3. “인천본부”란 한국은행 인천본부를 말하며, “본부장”이란 인천본부의 본부장을 말한다.
4. “인천본부 담당지역”이란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김포시를 말한다.
5.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이란 대출규정, 대출세칙 및 운용세칙에 따라 인천본부에 배정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관련 자금을 말한다.
6.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며, 같은 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자를 포함하되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

제2조(지원대상 대출실적)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원화대출실적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1. 인천본부 담당지역 소재 금융기관이 대출 실행 당시 서울특별시 이외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업자등록증(국세청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출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운전자금대출 및 시설자금대출 실적
2. 서울특별시 소재 금융기관이 대출 실행 당시 인천본부 담당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운전자금대출 및 시설자금대출 실적

제3조(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구분 운용) ①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전략지원부문, 특별지원부문 및 일반지원부문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 ② 전략지원부문 및 특별지원부문 한도는 지역별 경제사정, 금융기관의 대출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부장이 정한다. 이 경우 전략지원부문 한도는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40% 이상으로 한다.
- ③ 일반지원부문은 전체 한도 중 전략지원부문 및 특별지원부문에 배정하고 남은 한도에서 배정한다.

제4조(지원대상 중소기업)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별표 1>에서 정한 선정기준을 충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1. 창업기업
2. 벤처기업
3. 혁신기업
4. 녹색기업
5. 추천기업
6.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7. 전입기업
8. 수출관련기업
9. 소재·부품·장비 생산기업
10. 농림수산업 관련기업
11. 명절·재해 자금 필요기업 등
12. 기타 지원기업
13. 경기부진·경기민감업종 영위기업

제5조(전략지원부문) ① 전략지원부문은 제4조제6호(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및 제10호(농림수산업 관련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중 인천본부 담당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② 전략지원부문은 운전자금대출 및 시설자금대출 실적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다만, 제4조의 <별표 1>에서 정한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부터 고용창출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운전자금대출 실적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③ 전략지원부문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정한다.

④ 업체당 지원한도는 20억원(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 40억원이며,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0억원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특별지원부문) ① 특별지원부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중소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1. 인천본부 담당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한 기업
 2. 제4조 제13호(경기부진·경기민감업종 영위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3.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99조의 업무보고서 별책서식 중 「여신종별 신용등급별 월중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 및 가산금리 현황」(B2512-2)에 따른 신용등급 1~3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다만, 금융기관이 SOHO 기업에 대해 기업여신 신용등급 외의 별도 신용등급을 적용할 경우에는 배정대상에 포함한다)
- ② 특별지원부문은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만기 1년 이내의 운전자금대출 실적으로 대상으로 지원한다.
- ③ 특별지원부문은 지원대상 대출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정한다.
- ④ 업체당 지원한도는 10억원(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 20억원이며,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억원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의2(일반지원부문의 전환) ① 본부장은 제5조 또는 제6조의 방법으로 배정하면 전략지원부문 또는 특별지원부문의 한도로 지원대상 대출 전부를 지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부를 일반지원부문의 전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선순위의 대출을 전략지원부문 또는 특별지원부문의 배정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대출은 일반지원부문의 전환한다.

1. 이차보전을 받지 않는 대출
2. 지원부문별로 다음 각 목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대출
 - 가. 전략지원부문
 - 1순위 : 농림수산업 관련기업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중 <별표 1-1>의 항공 또는 로봇산업
 - 2순위 :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중 1순위 외의 기업
 - 나. 특별지원부문
 - 1순위 : 조선업, 운수업, 해운업 또는 여행업 영위 기업
 - 2순위 : 특별지원부문 대상 업종 중 1순위 외의 기업
3. 제8조제2항에 따른 연환산 월평균 지원액이 적은 기업에 대한 대출
4. 담보나 보증 없이 취급된 순수신용대출(다만, 개인 또는 법인에 의한 보증 대출은 포함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실적은 후순위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전환 시 우선순위는 제2항을 적용한다.

1.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금융기관이 제출한 대

출실적

2. 대출 취급일이 보고년월에 해당하지 않는 대출실적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일반지원부문으로 전환되는 기업은 제6조제1항 제3호의 신용등급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⑤ 일반지원부문으로 전환하여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배정받은 대출실적은 대환 등을 통하여 다른 지원부문으로 지원을 전환할 수 없다.

제7조(일반지원부문) ① 일반지원부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제6조제1항제3호의 신용등급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1. 제4조의 지원대상기업 중 제5조(전략지원부문) 및 제6조(특별지원부문)의 지원대상이 아닌 기업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2에 따라 지원부문이 전환된 기업

② 일반지원부문은 운전자금대출 및 시설자금대출 실적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③ 일반지원부문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 이내에서 비례배정한다.

④ 업체당 지원한도는 10억원(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 20억원이며,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억원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략지원부문에서 전환 배정된 업체의 지원한도는 제5조제4항을 적용한다.

⑤ 제5조, 제6조, 제6조의2 및 이 조에 따라 자금을 배정한 후 남은 한도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지원부문에 재배정한다.

제8조(지원일몰제도) ①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지원기간 만료 후에도 지원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기간이 누적하여 5년(60개월)을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신규 지원을 2년간 중단한다. 다만, 지원기간 동안의 연환산 월평균 지원액의 누적 지원 금액(지원기간 동안의 월별 지원금액의 합계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이 2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20억원에 도달할 때까지 신규 지원을 계속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중소기업 지원자금 지원실적은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지원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에 따라 신규지원이 중단된 업체에 대해 신규지원을 재개하였을 경우에는 신규지원 재개시점부터 새롭게 지원실적을 계산한다. 다만, 신규지원 중단기간동안 자금을 수혜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을 신규지원 재개시점 이후의 지원실적에 포함한다.

④ 본부장은 자연재해 및 지역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명절자금 수혜업체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신규지원 중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명절·재해자금 및 기타지원자금) 본부장은 제4조제11호(명절·재해 자금 필요기업 등) 및 제12호(기타 지원기업)에 따른 자금 지원 시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 지원한도, 지원비율 및 지원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은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대상 대출실적에서 제외한다.

1.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최종부도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2. 「은행업감독규정」 제79조제1항에서 정하는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에 대한 대출금
3. 폐업업체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대출금
4. 다른 규정 등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한국은행 자금이 지원되는 대출금
5.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금으로부터 자금이 지원되는 대출금(이차보전대출 제외한다)
6. 마이너스통장식 대출, 한도거래대출 등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대출금
7. 부동산업, 유흥업 등 <별표 2>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에 대한 대출금

제11조(자료제출) ① 금융기관이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배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고서 및 자료를 매월 12일까지(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전 영업일을 해당일로 본다) 인천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한국은행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배정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한국은행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취급실적 요약보고서 <별지 제2호 서식>
3. 한국은행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신규취급실적 보고서 <별지 제3호 서식>
4. 한국은행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취급실적 변동보고서 <별지 제4호 서식>
5. 창업중소기업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
6. 그 밖에 본부장이 요구하는 배정 관련 자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금융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기 곤란하거나 인천본부에 제출된 자료를 적시에 심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전월 말까지 별도로 제출기한을 정하여 금융기관에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인지한 후 지체 없이 통지한다.

1. 제출기한 전후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비영업일이 3일 이상 있는 경우
 2. 전쟁 또는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정보통신수단 또는 우편수단이 전국적 또는 국지적으로 마비된 경우
- ③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지원한 대출의 만기도래, 중도상환, 원 차주의 폐업업체 또는 최종부도거래처 지정 등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한국은행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취급실적 변동보고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해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금융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보고서 및 자료가 제출형식 및 지원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 ⑤ 본부장은 제출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았거나 허위 또는 착오로 작성·제출된 보고서 및 자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접수하지 않거나 해당 대출을 대출실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자금의 회수 및 배정) 본부장은 매월 첫 영업일에 전월중 각 금융기관에 배정한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함과 동시에 제11조의 보고서 및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한 당월 중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해당 금융기관의 결제모집 앞으로 일괄 배정한다.

제13조(제재) ① 본부장은 제11조에서 정한 보고서 및 서류 등을 허위 또는 착오로 작성·제출하여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과다 또는 부당하게 수혜한 것으로 판명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과다 또는 부당하게 수혜한 지원자금의 회수
2. 과다 또는 부당하게 수혜한 지원자금 적수의 2.5배수 이내에서 위규사유별 배정한도 감축

위규사유별 한도감축 배수

위규사유	한도감축 배수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비영리법인을 제외한다)에 대한 대출 제10조제2호의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에 대한 대출 대출금 중도상환보고가 누락 및 지연된 대출	2.5배 이내
제2조의 지원대상 대출실적에 해당하지 않는 대출 제10조제1호의 최종부도거래처에 대한 대출 제10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와 실제 내용이 상이한 대출 등	2.0배 이내
제10조제3호에 따른 폐업업체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대출	1.5배 이내 ¹⁾

주: 1) 기업체의 폐업신고 지연(또는 소급) 사실을 금융기관이 소명한 경우 국세청에 등록된 폐업일로부터 지연(또는 소급) 신고일까지는 1배수 차감

② 제1항의 제재 등으로 회수된 한도는 다음과 같이 배정한다.

위규제재감축분의 배정

배정대상	배정대상 월에 제재조치 대상이 아니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배정액이 있는 금융기관
배정액	각 배정대상의 배정 대상월 직전 3개월간 평균 최종 배정액의 배정대상별 구성비에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위규제재감축분의 총합을 곱한 금액

제14조(위임) 이 기준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본부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5조(기타 사항)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출규정, 대출세칙과 운용세칙 등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03년 6월 19일부터 시행(2003년 7월 한도배정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 < 2004. 6. 16.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4년 6월 16일부터 시행(2004년 7월 한도배정시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기 지원 중인 우선지원한도 배정대상 대출에 대하여는 이 기준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만기일로부터 최장 2년까지 지원한다.

부 칙 < 2004. 11. 23.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2005년 2월 한도배정시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전에 이미 취급한 우선지원한도 배정대상 대출은 만기일까지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 2005. 8. 2.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2005년 10월 한도배정시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전에 이미 취급한 우선지원한도 배정대상 대출은 만기일까지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 2006. 8. 8.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2006년 10월 한도배정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 < 2006. 11. 9.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6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 한도배정은 금융기관의 2006년 11월말 실적이 반영되는 2007년 1월 한도배정시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전에 이미 취급한 우선지원한도 배정대상 대출은 만기일까지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 2007. 6. 21.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7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 한도배정은 금융기관의 2007년 7월말 실적이 반영되는 2007년 9월 한도배정시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전에 이미 취급한 우선지원한도 배정대상 대출은 만기일까지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기 지원중인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한도 배정대상 대출에 대하여는 이 기준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만기일로부터 최장 2년까지 지원한다.

부 칙 < 2008. 6. 5.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한도배정은 금융기관의 2008년 7월말 실적이 반영되는 2008년 9월 한도배정시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전에 이미 취급한 우선지원한도 배정대상 대출은 만기일까지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 2010. 8. 30.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한도배정은 금융기관의 2010년 9월말 실적이 반영되는 2010년 11월 한도배정시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기준 시행일전에 이미 취급한 우선지원한도 배정대상 대출은 만기일까지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6조에 의한 누적 지원기간 및 누적 수혜실적의 기산일은 2007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 2011. 5. 23.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한도배정은 금융기관의 2010년 6월말 실적이 반영되는 2011년 8월 한도배정시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전에 이미 취급한 우선지원한도 배정대상 대출은 만기일까지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 2012. 4. 20. >

제1조(시행일) ① 이 기준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기준에 의한 한도배정 개시일은 2012년 8월 첫영업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앞 배정된 인천본부 총액한도대출은 종전 기준에 따른다.

부 칙 < 2013. 7. 30.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3. 8. 1.부터 시행한다. 단, 한도배정은 금융기관의 2013.8월 취급분 실적이 반영되는 2013.10월 한도 배정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 < 2014. 8. 28. >

제1조(시행일) ① 이 기준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 2014. 10. 14.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5. 1. 26. >

제1조(시행일) ① 이 기준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② 2015년 2/4분기 전략지원부문으로 배정된 사전한도는 종전 기준에서 정한 인천광역시 선정 비전기업 및 향토기업의 지원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 2015. 4. 28. >

제1조(시행일) ① 이 기준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 2015. 5. 8. >

제1조(시행일) ① 이 기준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5. 6. 25. >

제1조(시행일) ① 이 기준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0. 30>

제1조(시행일) ① 이 기준은 2015년 11월 2일(2015년 9월 대출취급실적)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1. 30>

제1조(시행일) ① 이 기준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4.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0. 1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11월 1일(2016년 9월 대출취급실적)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6. 2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8.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②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종전 기준에 따라 인천본부장이 부여한 금융기관별 사전한도는 2017년 12월 배정시까지 적용한다.

부 칙 <2019. 1.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3월 1일(2019년 5월 한도배정)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전에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19. 8.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9월 1일(2019년 11월 한도배정)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전에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20. 4.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4월 1일(2020년 6월 한도배정)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전에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20. 1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11월 1일(2021년 1월 한도배정)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전에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21. 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전에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22. 7.>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전에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23. 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전에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23. 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후단을 제외한다)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지침의 폐지) 「C2자금 전략 및 특별지원부문 운용방식 안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전에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1>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대출실적 선정기준

전산코드	지원부문	선정기준 ¹⁾
A1	창업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며 인천본부 담당지역(인천광역시, 부천시, 김포시)에 소재하는 제조업* 영위 기업(금융기관 결제모점장이 확인<별지 5호서식>한 경우)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10 ~ 34
A2	벤처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확인기관이 벤처기업임을 확인한 중소기업(창업후 7년 이내 기업 제외)
A3	혁신기업	<p>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창업후 7년 이내 기업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INNO-BIZ기업 및 MAIN-BIZ기업 - 최근 2년 이내(대출시점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산학연 Collabo R&D’사업 참여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사업 참여기업으로서 최근 2년 이내(대출시점 기준) 협약과제를 완료한 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인정한 기업부설연구소 운영 기업
A4	녹색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제품 또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생산업체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부가 선정한 녹색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인증한 GR마크(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 부여제품 생산업체 -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우수 Green-Biz 선정기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제품의 인증(설비인증)을 받은 기업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 녹색사업 인증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취득한 기업
A6	추천기업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광역시가 선정한 비전기업(인증서 발급 5년 이내)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부터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및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인천광역시로부터 고용창출기업 및 고성장기업 자금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기업

전산 코드	지원부문	선 정 기 준
A8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p>인천본부 담당지역(인천광역시, 부천시, 김포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표 1-1>에 해당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 혁신기업, 녹색기업 및 수출관련기업 - <별표 1-1>에 해당하는 비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제외)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부터 고용창출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중 영리법인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또는 뿌리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A9	전입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지역으로부터 인천본부 담당지역(인천광역시, 부천시, 김포시)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제조업* 영위 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10 ~ 34
A10	수출관련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가 지정한 글로벌 강소기업 1000+ 또는 수출 유망중소기업
A11	소재·부품·장비 생산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확인서를 발급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A13	농림수산업 관련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임업·어업* 영위 중소기업 또는 농림축산업자·농어업법인**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01 ~ 03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
A14	명절·재해 자금 필요기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절적 자금수요, 재해 등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특별지원 하는 기업
A15	기타 지원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지원부문에 해당되지 않는 지원기업으로서 한국은행 인천본부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기업
A16	경기부진· 경기민감업종 영위기업	<p>인천본부 담당지역(인천광역시, 부천시, 김포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한국은행 인천본부가 자체 선정한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²⁾</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선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311) 2) 해운업(501~502) 3) 도소매업(45~47) 4) 운수업(49, 51~52) 5) 음식·숙박업(55~56) 6) 여행업(752) 7) 여가업(90~91)

주: 1) 인증 또는 계약 등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취급일자가 관련 인증 또는 계약 등의 유효기간 이내로 제한
2) 추천금액과 대출 실행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제출된 증빙으로 금리를 감면받고 대출이 실행된 경우에만 지원
3) 해당 기업이 복수의 사업을 영위할 경우 주된 사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업종, 매출액, 사업계획서의 순서에 따라 결정(다만, 사업계획서는 창업 후 2년 이내인 기업에 한정)

<별표 1-1>

미래성장유망산업 및 제조업내 5대 업종

산업명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KSIC, 제10차)	
바이오 산업	화장품 제조업	2042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20493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20495	
	의약품 화합물 및 향생물질 제조업	21101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102	
	의약품 제조업	21210, 21220, 212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품 관련 제품 제조업	21300	
	설치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22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27192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199	
	물질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 제조업	27213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27219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70111, 70112, 70113, 70119, 70130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72911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909	
미래 성장 유망 산업	「관광진흥법」 제3조에서 제6조에 의거 등록·허가·신고·지정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단, 관광유희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희업, 외국인전용 유희음식점업 제외)	-	
	물류 산업	도로화물 운송업	493
		해상운송업	501(50111, 50121 제외)
		항공운송업	51(51100 제외)
		보관 및 창고업	5210
		물류 터미널 운영업	52913
		화물취급업	5294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52991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52992
		화물 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52993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업대업	76390	
	항공	항공산업 글로벌 인증(AS9100, NASCAP)을 받은 기업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3131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31322
	로봇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2조의2에 의거 지능형로봇전문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산업용 로봇 제조업		29280	
제조업내 5대 업종	1차 금속 제조업	24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59(2592, 2593, 2594, 2599 제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26299 제외)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일반목적용 기계제조업	291(2919 제외)
		특수목적용 기계제조업	292(2925, 2929 제외)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304 제외)	

<별표 2>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배정 제외 업종¹⁾

업종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제10차)
도소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7811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주점업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6213 생맥주 전문점
	56219 기타주점업
금융관련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711 법무관련 서비스업
	712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51 회사본부
수의업	731 수의업
인력공급업 ²⁾	7512 인력공급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75993 신용 조사 및 추심대행업
보건업	86 보건업
노래방	91223 노래연습장 운영업
도박장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91291 무도장운영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111 이용업
	96112 두발미용업
	96113 피부미용업
	96119 기타미용업
	96122 마사지업
	96999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

- 주: 1) 해당 업체가 지원제외 업종의 다른 지원대상 업종을 동시에 영위하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2)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부터 고용창출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에 대한 지원시에 한정하여 적용 제외
 3) 등록된 업종코드에 관계없이 도박, 성인용품 등 불건전, 사행성을 조장하는 업체의 경우 제외

한국은행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신규 취급실적 보고서

(년 월중)

한국은행 인천본부장 귀하

은행 부(점)장 (인)

(백만원, bp)

신청정보				업체현황									대출내역											
일련 번호	기관 코드	각행 관리번호 ¹⁾	신청 사유 ²⁾	지원 부문 ³⁾	지원부문 여부 ⁴⁾	신용 등급 ⁵⁾	업종 ⁶⁾	업체 소재지 ⁷⁾	업체명	사업자 구분 ⁸⁾	법인 등록번호 ⁹⁾	사업자 등록번호 ¹⁰⁾	대표자 성명	자금 구분 ¹¹⁾	취급 점포명	취급점 소재지 ⁷⁾	대출일 ¹²⁾	만기일 ¹³⁾	대출 기간	대출 금액	금리 ¹⁴⁾	채권 보전 ¹⁵⁾	이자보전 금리 ¹⁶⁾	

- 주: 1) 개별 대출건에 대한 고유 계좌번호, 업체당 "신규취급실적" 건별로 기재(업체당 신규취급실적이 한건 이상인 경우 건별로 관리번호 부여)
 2) "신규" / "대환" / "만기연장"으로 구분하여 기재("대환" 또는 "만기연장"으로 기재한 경우 취급실적 변동보고서에 기존 취급분의 변동사유를 "만기상환"으로 하여 반드시 보고)
 3) 지원부문별 코드는 "한국은행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을 참조하여 기재
 4) 일반지원부문 해당시 "0", 전략지원부문 해당시 "1", 전략지원부문 지원대상 대출실적이 일반지원부문 지원대상 대출실적으로 간주된 경우 "2", 특별지원부문 해당시 "3", 특별지원부문 지원대상 대출실적이 일반지원부문 지원대상 대출실적으로 간주된 경우 "4"로 기재
 5) 은행 자체 신용등급을 기재, 금융기관이 SOHO에 대해 기업여신 신용등급 외에 별도의 신용등급을 부여할 경우 SOHO 대출은 "SOHO"라고 표시
 6)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최종개정분) 5자리 숫자 기재
 7) 광역시 지역은 시 단위, 일반 시 및 군 지역은 도/시·군 단위로 기재 : 예) 인천, 경기부천
 8) "개인" / "법인" 으로 구분하여 기재
 9) "-" 생략, 법인사업자만 법인등록번호란 기재(개인사업자의 경우 공란으로 남겨둠)
 10) "-" 생략
 11) "시설" / "운전" 으로 구분하여 기재
 12) 신청사유가 "대환"인 경우 대환일, 기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여 신청하는 경우 당초 상환기일
 13) 신청사유가 "대환" 및 "만기연장"인 경우 대환 또는 만기연장 시점에 새로이 산정된 상환기일
 14) 대출취급시 적용금리를 기재
 15) "순수신용"(개인 및 법인에 의한 보증대출 포함) / "담보" / "보증"(신용보증기관 및 정부 보증) / "혼합"으로 구분하여 기재
 16) 이차보전이 없는 경우 0, 있는 경우 이차보전 금리를 기재

<별지 제4호 서식>

한국은행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취급실적 변동보고서

(년 월중)

한국은행 인천본부장 귀하

은행 부(점)장 (인)

(백만원)

변동전 보고내역							변동보고내역						
기관 코드	각행 관리번호 ¹⁾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자금 구분	취급 점포명	변동전 잔액	변동 일련번호 ²⁾	변동 사유 ³⁾	변동사유 발생일 ⁴⁾	변동 처리일 ⁵⁾	변동 금액	변동후 잔액	비고

- 주: 1) 변동이력 관리를 위해 기존취급건의 각행 관리번호를 기입
 2) 개별 대출건에 대해 변동이 여러 차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변동건의 발생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
 3) "만기상환"("대환" 또는 "만기연장" 건도 기존 취급분은 "만기상환"으로 처리) / "중도전액상환" / "중도일부상환" / "지원종료" / "폐업" / "최종부도" /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기타의 경우 비고란에 상세사유 기재
 4) 만기일자, 상환일자, 폐업일, 최종부도일 등(다만 지원기간 종료로 한국은행의 지원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로 기재)
 5) 보고 대상월의 처리일자를 기입(예 : 3월 취급실적 변동보고서는 3월의 처리일자만 기재)

